

신재예방요율제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신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 적용대상

- 재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사변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보험료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적용방법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이 있으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신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신재보험료 징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신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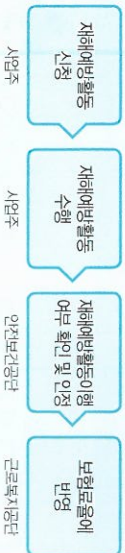
-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 (신재예방요율의 적용)
 - 신재보험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6호)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허를

평가 및 교육	인정 유효기간	인하율
위험성평가 인정	3년	20%
사업주교육 인정	1년	10%

-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 ※ 사업주는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에 높은 것을 적용

03 업무처리절차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1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신청 대상?

- 재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신재보험료율 20% 인하)
 -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사변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03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는?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적직업인중 일부를 컨설팅 헤드업니다(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등록된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거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cs.kostar.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

0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3년)동안 신재보험료의 20%가 인하됩니다(50명 미만 재조업에 한함).
- ②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감독 대상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정한 사업장에 한함.
- 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은 이렇게 합니다.

1 사업주교육 적용대상은?

- 재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 ※ 교육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린?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에 이수하고, 사업장의 신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03 추진절차는?



시행기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교육센터) 및 지사(교육담당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장 사업장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장 사업장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① 고용·신재보험 증명서(교육기관 제출)
② 전년도 건강보험료징수명세서(사무서 제출자료)	② 전년도 건강보험료징수명세서(사무서 제출자료)	② 국민연금 증명서(사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증액신청 신고서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증액신청 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정기입내역 확인서

04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 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 신재보험료의 10%가 인하됩니다.
 -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에만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곁음.
- ② 사업주는 신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